#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무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398 발의연월일: 2023. 3. 3.

발 의 자:한무경・김상훈・하영제

정경희 • 박대출 • 김미애

유경준 · 노용호 · 엄태영

권명호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,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사다리 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으로 2024년 7월21일까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.

이 법에는 수탁·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등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14개 특례가 있으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등 국내 50여개 법령에서 이 법을 인용하고 있음.

따라서 이 법이 없어지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하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고 중견기업 정의 및 지원 근거 미비에 따른 입법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.

이에 기업성장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중견기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(안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).

아울러 중견기업 확인서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에 대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것임(안 제25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5조(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 제25조(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 의 발급) ① (생 략) 의 발급) ① (생 략)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② -----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 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 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-----. 이 경우 그 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 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다. 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③ ~ ⑥ (생 략) ③ ~ ⑥ (생 략)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관한 특별법 부칙 <삭 제> 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시행일 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.